##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553

발의연월일: 2022. 7. 20.

발 의 자:배준영·김상훈·최승재

박성민 · 김예지 · 이태규

윤창현 • 윤재옥 • 정진석

권명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어 일정한 범위의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 고, 도서지방의 자가발전 석유류나 여객운송 목적의 선박에 사용되 는 석유류에 대하여 면세하며, 내항 화물운송 선박에 사용되는 경유 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감면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물가나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생활환경이 내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지역주민이나 농어업인에게 경제적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는 현행 조세지원특례를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축산·임업용 기자재나 석유류, 경유에 대한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도서지역주민이나 농어민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2항, 제106조의2제1항, 제111조제1항 및 제111조의5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를 "제1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로, "적용하고"를 각각 "적용하며"로, "적용하며"를 "적용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 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5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u>제1호</u> , 제4	<u>제1호는 2025</u>
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	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	<u>만 적용하고</u>
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만 <u>적용하고</u> , 제2호, 제3호, 제4	<u>적용하며</u>
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u>적용</u>	<u>적용</u>
<u>하며</u> ,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	하고
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u>적용하고</u> , 제8호	<u>적용하며</u>
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	
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	
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u>2022년 12월</u>	<u>2025년 12월</u>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31일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 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 에만 적용한다.

- 1. ~ 22. (생략)
- ③ ~ ⑤ (생 략)

제106조의2(농업 · 임업 · 어업용 7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 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 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 우 제1호는 2023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 고, 제2호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 다.

<u>.</u>
1. ~ 2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
<u>2025년 12월 31일</u>

- 1. 2. (생략)
- ② ~ ② (생 략)
-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1. 2. (생략)
  - ② (생략)
-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사용할 목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

1.•2. (현행과 같음)
② ~ ② (현행과 같음)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
세의 면제) ①
<u>2025년 12월 31일</u>
<u>.</u>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
면) ①

항제2호에 따른 경유(이하 이	
조에서 "경유"라 한다)에 대해	
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	
을 리터당 56원 감면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